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0호
심사일자	2026. 6. 16.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30
------	-----

2026년 6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5. 27.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6. 1.

다. 상정일자: 2026. 6. 16.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여성문화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관 이용대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대관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강료 기준을 보완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조문 인용 오류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인용 오류 정비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제1항, 제19조제2항)
- 회관 이용대상 규정 정비 (안 제6조)
-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 및 북한이탈주민 감면대상 신설 (안 제17조)
- 회관 사용 제한 사유 신설 (안 제18조)
- 대관료 기준 체계 정비 (별표1)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정비 (별표2)
- 수강료 기준 보완 (별표3)
- 수강료 반환기준 명확화 (별표4)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제28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련부서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성별영향분석평가)
- 기 타
 -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2) 입법예고: 2026. 4. 9. ~ 4. 29. (20일간)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관련사항: 2025. 송파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통보(감사담당관-13941, 2025.11.14.)
 - 제도개선 요구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 세부기준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인용 조문의 오류 및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6조(시설의 이용대상)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어 있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민 또는 법인·단체’로 하고,
 - ▶ **안 제17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단체 행사 등에 감면대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였고, 같은 항 제10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 법률명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 **안 제18조(회관의 사용제한 등)제5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 **별표3(여성문화회관 수강료 기준)**는 여성문화회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교양 강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4(수강료 등 반환기준)에서는 개강 첫 수업 당일에는 1회차를 수강한 후, 수강취소를 원하는 경우에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 감면 규정, 회관 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며, 대관료 및 수강료, 수강료 반환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후 이용하는 구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대관료,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최옥주 위원

- 안 제17조제1항제9호의 인용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제17조의2에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은 조문의 구조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7조제1항제10호의 인용 법률명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약칭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 인용 조례명과 법률명에 대한 수정 및 조문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함.

【질의】 전정 위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삭제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개강 첫 수업 당일에 1회차를 수강한 후, 전액을 환불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 기초보장수급자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함.
- 이용자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첫날 참여 후, 수강취소를 원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려는 사항임.

5.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 및 조례명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사용료의 반환 관련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17조제1항제9호 중 잘못 인용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정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안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잘못 인용된 「북한이탈주민법」 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로 수정함.

- 「북한이탈주민법」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안 제17조의2 본문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수정함.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 ----- ----- --. 단,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단,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p>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p> <p>5. ~ 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p> <p>② (생략)</p> <p>제17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p>1. ~ 3. (생략)</p>	<p>4. <삭 제></p> <p>5. ~ 8. (현행과 같음)</p> <p>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p> <p>10.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 (현행과 같음)</p>	<p>4. <삭 제></p> <p>5. ~ 8. (현행과 같음)</p> <p>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p> <p>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	---